

부산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59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6. 2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13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55,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21. 6. 9.자 참고자료 외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없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